# 산학협력단 보수규정

신설 2006. 03. 31
제1차 개정 2009. 05. 01
제2차 개정 2009. 09. 18
제3차 개정 2010. 03. 01
제4차 개정 2011. 03. 01
제5차 개정 2012. 03. 01
제6차 개정 2012. 09. 25
제7차 개정 2013. 02. 15
제8차 개정 2013. 10. 10
제9차 개정 2013. 11. 26
제10차 개정 2014. 01. 06
제11차 개정 2014. 05. 09
제12차 개정 2014. 05. 30
제13차 개정 2015. 08. 13
제14차 개정 2016. 04. 11
제15차 개정 2017. 01. 13
제16차 개정 2017. 03. 17
제17차 개정 2021. 01. 29
제18차 개정 2021. 09. 13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각 소속기관(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 05. 01 개정)

**제 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대상자는 산학협력단의 정규 직원으로 한다.

**제 3장(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9. 05. 01 개정)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 4조(지불방법)** ①보수는 현금 또는 예금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국외연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5조(일할계산)** 보수를 일할로 계산할 때에는 30분의 1을 1일분으로 하며, 시간으로 계산할 때에는 1일분의 8분의 1을 1시간분으로 한다. (2009. 05. 01 개정)

**제 6조(기본급)** 기본급은 별표1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2009. 05. 01 개정) (2011. 03. 01 개정) (2012. 03. 01 개정) (2013. 02. 15개정) (2021. 09. 13 개정)

**제 7조(제수당)** 제수당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급식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안전관리수당, 직급보조비, 직책보조비, 월정직책금으로 구분하며,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고 매월 급여 지급 시 포함 지급한다. (2009. 05. 01 개정) (2009. 09. 18 개정) (2010. 03. 01 개정) (2011. 03. 01 개정) (2012. 03. 01 개정) (2012. 09. 25 개정) (2013. 02. 15 개정) (2013. 10. 10 개정) (2013. 11. 26 개정) (2014. 01. 06 개정) (2014. 05. 09 개정) (2017. 03. 17 개정) (2021. 01. 29. 개정) (2021. 09. 13 개정).

**제 8조(기본급외 급여)** ①특별상여금은 소속 직원의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지급하되 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9. 05. 01 개정)

②시간외 근수수당의 지급기준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2009. 05. 01 개정)

**제 9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직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일에 승진전의 직명 또는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④승진되기전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직명 또는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2009. 05. 01 신설)

**제10조(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은 근속연수 만 1년 이상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산정방식 및 지급절차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5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①이 규정은 2015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②변경된 보수규정 별표2의 직책보조비와 월정직책금 적용기준은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지급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 09. 13)

별표1) 행정직 및 전문직 직원의 기본급표

# 행정직 및 전문직 직원의 기본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1 | 2,807,910 | 2,527,890 | 2,280,520 | 1,954,570 | 1,746,800 | 1,441,000 | 1,293,080 | 1,152,980 | 1,025,380 |
| 2 | 2,906,290 | 2,621,700 | 2,365,000 | 2,034,390 | 1,817,380 | 1,507,970 | 1,352,120 | 1,208,950 | 1,077,920 |
| 3 | 3,007,320 | 2,716,480 | 2,451,770 | 2,115,520 | 1,890,510 | 1,577,140 | 1,414,520 | 1,268,000 | 1,133,620 |
| 4 | 3,110,450 | 2,812,660 | 2,539,420 | 2,198,600 | 1,966,630 | 1,647,890 | 1,480,250 | 1,328,100 | 1,192,670 |
| 5 | 3,216,140 | 2,909,720 | 2,628,300 | 2,282,720 | 2,044,860 | 1,720,580 | 1,548,100 | 1,390,930 | 1,252,240 |
| 6 | 3,323,150 | 3,007,230 | 2,718,240 | 2,367,640 | 2,124,590 | 1,795,470 | 1,617,710 | 1,455,080 | 1,313,230 |
| 7 | 3,431,650 | 3,105,880 | 2,809,050 | 2,453,360 | 2,205,640 | 1,870,360 | 1,688,020 | 1,519,680 | 1,371,480 |
| 8 | 3,541,300 | 3,204,520 | 2,900,130 | 2,539,680 | 2,287,650 | 1,945,600 | 1,758,420 | 1,581,450 | 1,427,800 |
| 9 | 3,652,180 | 3,303,610 | 2,992,000 | 2,626,010 | 2,369,840 | 2,021,010 | 1,825,480 | 1,640,590 | 1,481,660 |
| 10 | 3,763,850 | 3,402,880 | 3,083,880 | 2,712,340 | 2,452,740 | 2,091,850 | 1,889,540 | 1,696,380 | 1,533,400 |
| 11 | 3,875,350 | 3,502,490 | 3,175,750 | 2,799,460 | 2,529,920 | 2,159,000 | 1,949,910 | 1,750,500 | 1,582,770 |
| 12 | 3,990,450 | 3,605,450 | 3,271,230 | 2,881,480 | 2,604,540 | 2,225,080 | 2,009,220 | 1,803,390 | 1,631,880 |
| 13 | 4,106,350 | 3,709,120 | 3,359,840 | 2,958,210 | 2,675,470 | 2,287,210 | 2,065,540 | 1,854,250 | 1,678,870 |
| 14 | 4,222,510 | 3,802,840 | 3,442,040 | 3,029,760 | 2,741,470 | 2,345,910 | 2,119,480 | 1,902,740 | 1,724,540 |
| 15 | 4,323,970 | 3,889,520 | 3,517,800 | 3,097,080 | 2,803,860 | 2,402,400 | 2,170,790 | 1,949,290 | 1,768,280 |
| 16 | 4,414,080 | 3,968,800 | 3,588,560 | 3,160,520 | 2,862,640 | 2,455,200 | 2,219,630 | 1,994,260 | 1,810,600 |
| 17 | 4,493,990 | 4,041,840 | 3,654,200 | 3,219,480 | 2,917,820 | 2,505,630 | 2,266,440 | 2,036,320 | 1,851,880 |
| 18 | 4,565,180 | 4,108,460 | 3,715,280 | 3,274,750 | 2,970,090 | 2,553,410 | 2,311,060 | 2,077,070 | 1,890,420 |
| 19 | 4,628,890 | 4,170,060 | 3,771,860 | 3,326,140 | 3,019,110 | 2,598,560 | 2,353,040 | 2,116,230 | 1,928,170 |
| 20 | 4,686,090 | 4,226,380 | 3,824,570 | 3,374,280 | 3,065,130 | 2,641,240 | 2,393,160 | 2,153,540 | 1,964,250 |
| 21 | 4,738,720 | 4,277,680 | 3,873,590 | 3,419,330 | 3,108,430 | 2,682,160 | 2,431,440 | 2,189,270 | 1,998,220 |
| 22 | 4,785,710 | 4,324,940 | 3,918,910 | 3,461,480 | 3,149,170 | 2,720,610 | 2,467,520 | 2,223,410 | 2,030,960 |
| 23 | 4,825,130 | 4,368,150 | 3,960,800 | 3,501,080 | 3,187,630 | 2,756,780 | 2,502,460 | 2,255,970 | 2,062,020 |
| 24 | | 4,403,350 | 3,999,870 | 3,538,220 | 3,223,440 | 2,791,280 | 2,535,640 | 2,287,390 | 2,091,940 |
| 25 | | 4,437,050 | 4,032,080 | 3,572,360 | 3,257,320 | 2,824,100 | 2,566,880 | 2,317,130 | 2,120,360 |
| 26 | | | 4,062,520 | 3,601,400 | 3,289,360 | 2,855,080 | 2,596,970 | 2,346,080 | 2,146,150 |
| 27 | | | 4,091,120 | 3,628,070 | 3,315,930 | 2,884,470 | 2,622,490 | 2,370,200 | 2,168,320 |
| 28 | | | | 3,653,500 | 3,341,450 | 2,909,020 | 2,646,250 | 2,393,430 | 2,189,710 |
| 29 | | | | | 3,364,770 | 2,932,160 | 2,669,220 | 2,415,340 | 2,210,390 |
| 30 | | | | | 3,387,560 | 2,954,870 | 2,690,960 | 2,436,640 | 2,230,280 |
| 31 | | | | | | 2,975,900 | 2,711,640 | 2,457,230 | 2,250,080 |
| 32 | | | | | | 2,995,960 | | | |

(개정, 2017. 01. 13. ) (개정, 2017. 03. 17. ) (개정, 2021. 01. 29. ) (개정, 2021. 09. 13 )

별표2) 제수당 지급기준

# 제수당 지급기준

<table>
<tr><th>수 당 명 칭</th><th>지 급 시 기</th><th>지 급 액</th><th>비고</th></tr>
<tr><td>가계지원비</td><td>2월, 3월, 4월, 6월, 9월, 10월, 12월</td><td>■ 9월 및 10월 : 기본급의 20%<br>■ 3월, 4월, 6월 및 12월 : 기본급의 10%<br>■ 2월 : 기본급의 30%</td><td></td></tr>
<tr><td>명절휴가비</td><td>추석, 설</td><td>■ 추석과 설에 각각 기본급의 60%</td><td></td></tr>
<tr><td>급 식 비</td><td>매월</td><td>■ 급식비 : 매월 180,000원</td><td></td></tr>
<tr><td>정근수당</td><td>1월, 7월</td><td>
<table>
<tr><th>근무연수</th><th>지급액</th><th>근무연수</th><th>지급액</th></tr>
<tr><td>1년미만<br>2년미만<br>3년미만<br>4년미만<br>5년미만<br>6년미만</td><td>미지급<br>기본급의 5%<br>기본급의 10%<br>기본급의 15%<br>기본급의 20%<br>기본급의 25%</td><td>7년미만<br>8년미만<br>9년미만<br>10년미만<br>10년이상</td><td>기본급의 30%<br>기본급의 35%<br>기본급의 40%<br>기본급의 45%<br>기본급의 50%</td></tr>
</table>
</td><td></td></tr>
<tr><td>장기근속수당</td><td>매월</td><td>■5년 이상 10년 미만 : 월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60,000원<br>■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80,00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 : 월110,000원<br>■25년 이상 : 월130,000원</td><td></td></tr>
<tr><td>근무수당</td><td>매월</td><td>(지급 기준금액)<br>■3급 : 512,000원 ■4급 : 462,000원 ■5급 : 435,000원<br>■6급 : 407,000원 ■7급 : 396,000원 ■8급 : 373,000원<br>■9급 : 350,000원<br>(지급방법)<br>- 4월, 10월 : 지급 기준금액의 100%<br>- 7월, 1월, 2월 : 지급 기준금액의 150%<br>- 3월, 5월, 6월, 8월, 9월, 11월, 12월 : 지급 기준금액의 250%</td><td></td></tr>
<tr><td>가족수당</td><td>매월</td><td>■ 배우자 30,000원,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br>- 배우자를 포함하여 최대 4인까지 지급. 단, 2005. 01. 01 이후 출생한 자녀(부양가족)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td><td></td></tr>
<tr><td>자녀학비<br>보 조 금</td><td>5월, 11월</td><td>■ 중·고등학교 재학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 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br>■ 본교에 진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타 대학에 진학한 경우 학기당 1,000,000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총 8학기 지급)</td><td></td></tr>
<tr><td>안전관리수당</td><td>매월</td><td>■ 50,000(환경분석센터 근무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자)</td><td>부서명칭 변경</td></tr>
</table>

| | | | |
|---|---|---|---|
| 직급보조비 | 매월 | ■3급 : 450,000원 ■4급 : 350,000원 ■5급 : 280,000원<br>■6급 : 250,000원 ■7급 : 250,000원 ■8급 : 220,000원<br>■9급 : 220,000원 | |
| 직책보조비 | 매월 | ■400,000원 : 산학협력단장<br>■300,000원 : 부단장<br>■200,000원 : 직제규정에 따른 소속 기관장<br>■150,000원 : 직제규정 제12조 부원장 | |
| 월정직책금 | 매월 | ■500,000원 : 산학협력단장<br>■360,000원 : 부단장<br>■300,000원 : 직제규정에 따른 소속 기관장<br>■300,000원 : 산학협력지원부 부장, 소속기관 부장<br>■250,000원 : 산학협력지원부 과장, 소속기관 차장<br>■200,000원 : 직제규정 제12조 부원장, 산학협력지원부 팀장, 소속기관 과장<br>■120,000원 : 산학협력지원부 주임, 소속기관 대리 | |

**※ 직책 및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금의 기타 지급기준**

1) 겸직일 경우 최상위의 직책보조비와 월정직책금만 적용함.
2) 교비(직책보조비 및 월정직책금) 또는 외부(보조금 등)에서 인건비성 및 수당 등으로 지급 받는 금액이 위 직책보조비와 월정직책금을 합한 금액보다 많거나 동일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위 금액보다 적거나 지급받지 아니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함
3) 산학협력단 직제규정에 해당하는 기구는 직책보조비와 월정직책금은 소속기관 예산에서 지급하며, 소속기관의 예산이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2017.03.17 개정)
4) 학교 교비로 지급(단장, 부단장)되는 직책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은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지 아니함
5) 항 삭제(2017.03.17. 개정)

별표3) 승진 시 호봉획정표

# 승진 시 호봉획정표

| 승진전호봉 | 승진후호봉 | 승진전호봉 | 승진후호봉 | 승진전호봉 | 승진후호봉 |
|---|---|---|---|---|---|
| 1 | 1 | 11 | 10 | 21 | 20 |
| 2 | 1 | 12 | 11 | 22 | 21 |
| 3 | 2 | 13 | 12 | 23 | 22 |
| 4 | 3 | 14 | 13 | 24 | 23 |
| 5 | 4 | 15 | 14 | 25 | 24 |
| 6 | 5 | 16 | 15 | 26 | 25 |
| 7 | 6 | 17 | 16 | 27 | 26 |
| 8 | 7 | 18 | 17 | 28 | 27 |
| 9 | 8 | 19 | 18 | 29 | 28 |
| 10 | 9 | 20 | 19 | 30 | 29 |